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 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안 제2조)

1)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을 증원하거나 신규 심의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현행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인 500명('21년 3월 말 기준 485명)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한도를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표준 제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 추가
(안 제32조)

- 1) 현재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10개 행정기관에게 산업표준 제개정 등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 2)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소관 분야 산업표준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권한을 위탁하여 등 표준 제개정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의2)

- 1) 현행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차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2)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4)

- 1) 현행 시판품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2)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00명”을 “1,000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업표준심의회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u>5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 구성) ① ----- ----- ----- ----- ----- <u>1,000명</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u>산림청장</u>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 ----- ----- ----- ----- ----- ----- ----- <u>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u> ----- -----.
1. 삭제	
2. ~ 25. (생략)	2. ~ 2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	② ----- ----- -----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1. ~ 6. (생략)

③·④ (생략)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2. 개별기준

----- 농촌진흥청
장, 산림청장 -----.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 기준 (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신설>

2. 개별기준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 기준 (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